

(問) 저는 서울市内 中區에所在하고 있는 高層建物の 所有主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建物內에 收容되어있는 不特定多數人의 人命安全上, 火災時 容易하게 避難可能한 避難橋와 避難用타라를 設置하려고 하나 法規上에는 設置方法等이 뚜렷이 明文化 되어있지않아 어려움이 많은 實情이오니 이에대한 實協會의 意見을 回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答) 우선 人命安全을 위한 貴下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人命避難을 위한 施設에는 여러 가지 種類가 있으나 高層建物에서, 是 貴下께서 設置하고자 하는 避難橋가 상당히 効果的입니다. 그러면 우선 避難橋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다음 避難用타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避難橋

避難橋는 建築物의 屋上部分 및 外壁에 設置하여 開口部와 連結되도록 하여야 되며, 各各의 個所에서 相互避難 可能토록 設置하여야 됩니다. 避難橋는 바닥판 및 난간 등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避難橋는 常時架橋되어있는 固定式의 것과 使用할때에만 回轉 또는 미끄럼대 등에 의하여 架設되는 移動式의 것이 있습니다. 어느것이나 建築物 相互間에 充分한 길이로 架設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避難橋 各部の 構造 및 性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바닥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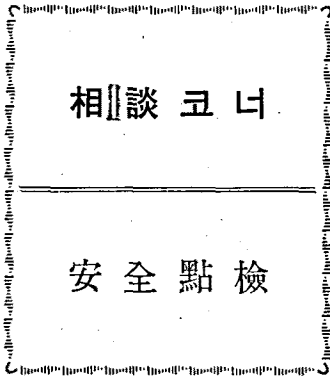
바닥면의 勾配는 5分の 1 未滿으로서 步行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되며, 非常時에 사람이 미끄러

지지 않도록 반드시 靑목을 設置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 붙이는 橫木 또는 縱木等은 間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 난간等

난간과 난간縱木等은 避難者의 顛倒防止上 난간의 높이를 1.1m以上으로 하고, 난간縱木等의 間隙을 約 18cm 以下로 하여야되며, 橫木 또는 縱木의 幅은 반드시 10cm 以上이 되도록 設置하여야 합니다.

다) 材料



相談 코너

安全點檢

避難橋의 材料는 人命의 安全上 鋼材, 알미늄材等이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耐蝕성이 없는 材料의 경우 반드시 耐蝕加工을 한 후 設置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 其他

避難橋의 強度는 積載荷重을 바닥면 1m<sup>2</sup>當 330kg로 하여 計算한 荷重에 充分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됩니다.

(2) 避難用타라

避難用타라는 防火對象物의 外壁 또는 地下層(dry area 部分)의 外壁에 連하여 設置하는 階段上의 것으로서 발판, 난간, 支持部로 構成

되어 있습니다.

避難用타라는 固定式의 것과 半固定式의 것이 있으며, 半固定式은 한動作으로 容易하게 架設할 수 있는 構造로 하여야 됩니다. 다음에 各部の 性能을 간단히 說明 드리겠습니다.

가) 발판 및 층계참

발판은 20cm 以上の 디딤면을 갖도록하고 非常時 避難者가 顛倒되지 않도록 靑목裝置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발판의 材料는 鋼材알미늄材等 耐久性이 있는것을 使用하여야 되며, 有効幅은 50cm 以上 60cm 以下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層階참은 避難用타라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마다 設置하여야하며, 발판의 가로 길이는 1.2m 以上을 유지하여야 안전합니다.

나) 난간等

난간等은 鋼材, 알미늄材等의 耐久性이 있는 材料로서 非常時 사람의 顛倒防止上 난간의 높이를 70cm 以上으로 하고 발판과 발판간의 사이는 18cm以下가 되도록 設置하여야 되며, 支持部等 重要한 部分은 견고하게 固定시켜야 합니다.

다) 其他

避難用타라의 強度는 積載荷重을 各바닥면마다 65kg, 층계참의 바닥 1m<sup>2</sup>當 330kg로하여 計算한 荷重에 充分히 견딜 수 있는 耐력을 갖도록 設置하여야 避難上 安全한 것입니다.

尹元重

<點檢 1部 次長>

(問)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說明하여 주십시오.

(答) 損害保險에 있어서는 損害가 發生한때 保險者가 그 補償할 金額의 最高限度로서 當事者間에 約定된 金額을 말한다. 保險金額은 保險期間을 通算하여 保險者가 補償할 金額의 限度를 意味하는 경우와 1회의 保險事故에 대한 保險者가 補償할 金額의 限度를 意味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付保金額은 保險價額과 一致하는 것이 常態이나 때로는 保險價額을 넘는 수가 있고, 反對로 未達될 때가 있다.

保險價額의 全部를 保險에 부친 경우를 全部保險 또는 全額保險이라고 한다.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할 때는 超過保險이 되고 未達된 때는 一部保險이 된다. 超過保險의 超過分에 대하여는 商法에서 無效를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商法에서는 保險者의 負擔은 付保金額과 保險價額에 對한 比率에 의하여 定해짐을 規定하고 있다.

付保金額은 無制限 定해지는 것이 아니고 普通 保險事故의 發生으로 因하여 發生할 수 있다고 豫想되는 損害額, 即 保險價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定해지는 것이 原則이다. 付保金額은 保險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 保險者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 그 自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支給할 金額은 實際로 發生한 損害額의 範圍內에서 損害額에 따라 約定된 付保金額과 保險價額의 比率에 의하여 定해지는

것이다.

生命保險契約에 있어서는 法律및 保險約款에 의하여 定해진 保險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支給될 一定한 約定의 金額을 保險金額이라고 한다. 그 金額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와의 合意에 의하여 定해진다. 商法은 約定할 保險金額에 대하여 制限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事業方法書에는 被保險者 1인에 대한 契約可能한 保險金額의 最高限度를 定하고 있다. 그러나 事業方法書란 保險會社가 따를 準則에 지나지 않

## 相談 코너

### 保險 相談

으므로 그 規定에 違反해도 保險契約自體에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그러므로 萬若 잘못해서 事業方法書에 定해진 保險金 最高制限額을 넘어서 保險契約이 締結되었다 하여도 그 契約自體는 有效하다.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는 保險價額이란 被保險利益 即 保險契約의 目的의 評價額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保險事故의 發生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받을 可能性이 있을 수 있는 不利益의 限度額을 意味한다. 保險에 의한 利得禁止의 原則에 의하여 被保險者는 保險에 의하여 不當利得을 가져서는 안되므로 保險

價額은 그 被保險利益에 관하여 付保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法律上的 限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그래서 當事者가 約定하는 保險金額은 그 保險價額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保險價額의 評價는 社會通念에 의한 客觀的 判斷을 基準으로 할 것이나 問題가 된 時期에 있어서의 客觀的 價額을 事後에 評價한다는 것은 實際上 容易한 일은 아니며 紛爭을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商法은 當事者間에 있어서 保險價額을 協定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協定保險價額) 일단 協定을 하면 이것이 客觀的 判斷에 의한 保險價額과 一致할 안하던 不問하고 當事者들은 이 保險價額에 拘束되며 한편 特別히 過大한 差異가 保險金額과 保險價額 사이에 있음을 保險者가 證明한 경우에 限하여 客觀的 判斷에 의하여 評價된 保險價額에 의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當事者間에 協定된 保險價額을 協定保險價額이라 하며 協定保險價額을 定한 保險金額을 既評價保險이라 하며 協定保險價額을 定하지 않은 契約을 未價評價保險이라 한다.

따라서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을 잘못 理解하므로써 混沌할 우려가 많으므로 保險契約을 締結할 경우나 權災를 當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點을 留意하시어 明確하게 알아두는 것이 契約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金 權 直  
(業務部 次長)